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8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1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이병진 · 안호영
김주영 · 박홍배 · 오세희
안도걸 · 박 정 · 이학영
이용우 · 허 영 · 서미화
김영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행법은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%로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·중·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,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는데, 이는 교육비 상승이나 사교육의 돌봄 기능 보완과 같은 현실의 교육비 지급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

이에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·중·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각각 20%,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고,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

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59조의4제3항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00분의 15”를 “100분의 2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300만원”을 “4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예능학원(음악, 미술 또는 무용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
가. ~ 라. (생략)

<신설>

2.·3. (생략)

④ ~ ⑪ (생략)

400만원-----.

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마. 초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예능학원(음악, 미술 또는 무용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⑪ (현행과 같음)